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43

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이재관·강선우·박지원

이강일 • 안도걸 • 안규백

김남근 • 전재수 • 위성곤

허성무 · 송재봉 · 김성환

문진석 • 이정문 • 김동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창업, 중소, 중견,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,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-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. 다만,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, 대통령 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(안 제2조의2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"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"을 "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또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(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의2(벤처기업의 요건) ① 벤	제2조의2(벤처기업의 요건) ①		
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			
갖추어야 한다.			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	1		
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	<u>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</u>		
<u>업"이라 한다)</u> 일 것	업"이라 한다) 또는 「중견기		
	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		
	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		
	른 중견기업(매출액 등이 대		
	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		
	족하는 기업에 한정한다)		
	_	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